

동두천시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6-232
----------	-------

제출일시 : 2012. 10 17

제 출 자 : 장영미의원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 동두천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할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예산,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그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리(안 제2조)
-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안제3조)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동두천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동두천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 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동두천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부서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소관 재산관리부서장과 사전 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부서장 또는 소관 재산관리부서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 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90일 전까지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협약 중 제5조제3호의 의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절차를 진행 중인 협약 및 체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협약에 대하여는 제4조 또는 제5조제3호를 적용한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

드림파워(주) 주최 주민설명회 관련

〈 발언내용(요약) 〉

- 드림파워(주)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하무인식의 사업진행을 삼가하여 주기바라며,
- 지난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음.

답변내용 : 지역경제과

■ 드림파워(주) 주최 주민설명회 관련

- 지난 10월 16일 드림파워(주) 주최로 시민회관에서 열린 LNG화력발전소의 주민설명회는 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당사자인 드림파워(주) 사업본부장이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였으며,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반대투쟁위(위원장 : 윤석진)와 협의하여 시의회를 포함하여 찬성·반대측 대표와 드림파워(주)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관하여 11월 8일(목)에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2.11.8(목) 15:00
 - 장 소 : 광암동 다목적회관
 - 참석대상 : 시의회(6명), 시(2명), 발전위(4명), 반투위(4명), 드림파워(4명)
 - ※ 기타 취재기자 등 참석
 - 주 관 : 동두천시(사회 : 동두천시)
 - 진행방법 : 기관, 단체별 질의·응답 방식